

의안번호	2214092
의 퇴 인	박정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16.
추계번호	25C6044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33조의3 (육아휴직급여의 지급)	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 ※ (안 제33조의3제2항)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학교·공립학교의 교직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함 ※ (안 제46조제1항제4호)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3조의3 (육아휴직급여의 지급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
- (사립학교 교원) 「사립학교법」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9에 따라 국립·공립 학교의 교원에 적용되는 육아휴직제도에 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
 - (사립학교 직원)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는 대부분의 사립 초·중등학교의 경우, 사무직원의 보수·복무 및 신분보장에 대해 「지방공무원법」을 준용하도록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

- 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관리는 개별 학교법인이 관리하고 있어 종합적인 현황 자료가 부재하며, 사학연금공단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 산정을 위해 휴직 등 신분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 받고 있는 상황

[표 1] 사립학교 교직원 육아휴직 신고자 수

구 분	(단위: 명)				
	2020	2021	2022	2023	2024
합 계	2,211	2,325	2,633	2,607	2,625
교원	1,314	1,333	1,528	1,520	1,521
사무직원	897	992	1,105	1,087	1,104

주: 사학연금 적용 대상자인 병원직원은 제외함
자료: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- 개정안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하여 사학연금기금을 재원으로 국립학교·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,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재 사립학교의 교원과 재정결함보조 사립학교의 직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국립·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제도에 준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, 개정안 시행 시 급여의 재원만 보통교부금 등에서 사학연금기금으로 변경될 수 있음
 - 이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
- 다만, 관련 자료의 부재로 인해 모든 학교가 국립·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, 개정안 시행 시 일부 학교의 육아휴직급여 신설·확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

- 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자료가 부재하며, 안 제33조의3제3항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신청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증가할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 수와 급여 단가 및 지급 기간 등을 추계하기 어려움

- ☐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☐ 없음

Ⅳ. 작성자

- 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